

##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

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, 수원시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

수 원 시



1. 위탁사업명 :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

### 2. 시설현황

가. 시설명 :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나. 위 치 :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63(송죽동)

다. 시설규모 : 지상3~4층 (임차면적 680m<sup>2</sup>)

라. 주요시설

- 지상3층(340m<sup>2</sup>) : 사무실, 상담실, 언어발달교실, 대강의실 등
- 지상4층(340m<sup>2</sup>) : 컴퓨터 강의실, 일반강의실 5

3. 위탁운영 기간 : 2021. 1. 1. ~ 2025. 12. 31.(5년간)

### 4. 위탁사무의 범위

가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
나.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

다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
라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
마.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
바.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·번역 지원사업

사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

아.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, 경기도 및 수원시장이 정하는 사업

5. 예산지원액 : 834,754천원(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)

※2020년 예산안이며, 매년 예산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6.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

가.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

나. 보조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, 위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(수탁 확정 후 공증서 제출)

다.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위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

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,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과 직원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

바. 위탁운영자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운영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사.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신청서의 '법인재정부담약정서'를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은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수탁기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

아. 수탁선정자는 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.

자.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'위·수탁 협약서'에 의함

## 7. 제외 대상

- 가. 공고일 현재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
  - 나.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(시설장 내정자 포함)
  - 다. 법인대표 및 시설장(내정자)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제35조(시설의 장)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
  - 라.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
  - 마.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  - 바.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
  - 사. 지방세징수법 제7조(관허사업의 제한)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
  - 아. 기타 수탁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하지 않는 법인
- ※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

## 8.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20. 10. 26(월) ~ 2020. 11. 2.(월) (7일간)

나. 접수기간 : 2020. 11. 3.(화) ~ 2020. 11. 4.(수) (2일간)

※ 접수시간 : 09:00 ~ 18:00

※ 신청서식 : 수원시 홈페이지(<https://www.suwon.go.kr>) 「공고/고시」  
에서 다운받아 사용

다. 접수장소 : 수원시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(☎ 031-228-2993)

라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우편·택배·팩스·E-mail 접수 불가)

마. 유의사항 : 공고내용 미숙지(제출서류 미비 등)로 발생한 책임은 수탁 신청법인(단체)에 있음.

## 9. 제출서류

가. 수탁운영기관 신청서(서식1)

나. 서약서(서식2)

다. 법인재정부담 약정서(서식3)

라. 법인 현황(서식4)

마. 사업계획서(서식5)

바. 각 항목별 증빙서류

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'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'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마.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-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의거 별도첨부(라벨부착)

### ※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

· 각각 A4 좌철 제본된 12권(원본1부, 사본11부)으로 제출(쪽수표시, 라벨부착)

※ 미제본시 접수 불가

· PPT 발표용 자료(USB)1부, 발표자료 출력본(제본)12부는 심의 5일전까지 다문화정책과 별도 제출

· 비대면 진행시 사전발표녹화영상 1부 준비(사전통보예정)

## 10. 수탁자 선정 심의

가. 심의방법 : 서류 및 면접

나. 면접방법

- 1) 법인관계자 또는 센터장(시설장 내정자)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
- 2) 신청접수순으로 하며, 사업계획 설명 20분 이내,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하되 심의위원회 합의로 조정가능 (PPT자료 이용하여 설명)
- 3)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시 비대면 등 변경 가능(발표녹화본 제출)

다.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(세부 선정심사기준 별첨참조)

총점	심사기준	수탁자의 적격성	시설운영의 전문성	재정운영의 책임성	운영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	비고
100		15	10	20	55	

라. 심사결정 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

-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  
(70점미만 시 다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)
-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,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하여 결정  
(70점 미만일 경우 미 선정)

마. 선정자 심사결과 발표 :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재

## 11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제출 후 추가·수정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 하지 않음(단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가능)
- 나.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,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다. 자부담 확보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, 수탁자로 선정 되면 법인이 제출한 “법인부담 예정액”을 자체부담금으로 확정, 위·수탁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년 출연하여 수탁기관 사업비로 충당함
- 라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 순위 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
- 마. 모든 확인서 등 제 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, 서류 미참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바.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지원팀(☎228-2993)으로 문의하기 바라며, 이견이 있을 시 수원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